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83
----------	-------

발의연월일 : 2026. 4. 3.

발 의 자 : 김문수 · 이광희 · 민병덕
양부남 · 이수진 · 김현정
김남근 · 한준호 · 박균택
전현희 · 염태영 · 전용기
조계원 · 김우영 · 신정훈
최혁진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난 2021년 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사권 독립 외에 지방의회 직렬이 별도로 신설되지 못함에 따라 여전히 집행부 소속 공무원과의 교류 또는 파견 형태로 인사관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의미의 인사권 독립과는 괴리가 있는 상황이고, 집행기관 파견 공무원의 경우 여전히 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의회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직군 및 직렬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인사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직군 및 직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① · ② (생략)</p> <p><u><신설></u></p> <p>④ (생략)</p>	<p>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u>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직군 및 직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u></p> <p>④ (현행과 같음)</p>